

규제심사대상 확인

접수번호 : 제 2022-2527호

제 목 : 택배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요령일부개정

위의 택배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요령일부개정을(를)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.

2022. 06. 23.

※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·개정안에 대한 것으로, 이후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,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

규 제 개 혁 위 원 회 위 원 장

